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4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인선·강대식·이만희

백종헌 • 김석기 • 정희용

김상훈・주호영・구자근

권영세 • 우재준 • 김승수

유영하 · 김기웅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울산과학기술원법」은 급변하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실무능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 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법률 제 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한다.

제12조의9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과기원에 박사 <u>석사</u> 및 학사	<u>전문석사 · 석사</u> -
과정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박사· <u>석사</u> 및 학	③ <u>전문석사·석</u>
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	<u>사</u>
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	
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	
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	
법」에 따른다.	
제12조의9(학위수여) 총장은 학칙	제12조의9(학위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	
<u>석사</u>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u>전문석사 • 석사</u>
	<u>.</u>